

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 청 북 도 의 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남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산업화 시대로의 효율적 대응 및 신성장 동력 기반마련을 위한 추진근거 등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빅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·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명시(안 제6조)
-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,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분석기술이 민간 및 공공부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
- 지난해 데이터3법*의 개정**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

* 데이터3법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
** 주요변경내용 : 다수의 법에 중복 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을 "개인정보", "가명정보", "익명정보" 3종류로 구분함

그 중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, 연구, 통계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

- 한국형디지털 뉴딜정책 및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산업화 시대로의 효율적 대응 필요
- 빅데이터 산업 관련 사업 추진 및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 등 충북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빅데이터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괄

현행	개정안
<u>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</u>	<u>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</u> ↳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을 포함
제1조(목적)	제1조(목적) ↳ 데이터산업 육성 목적
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 ↳ 빅데이터, 데이터산업에 대한 정의
제3조(도지사의 책무)	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↳ 도지사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
제4조(적용범위) ▶ 삭제	제4조(기본계획 수립)

현행	개정안
↳ 불필요한 조항 정비	↳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의무와 내용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▶ 삭제 ↳ 불필요한 조항 정비	제5조(빅데이터산업 활용)
제6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→ 개정 제4조	제6조(데이터산업 육성) ▶ 신설 ↳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 가능 사업 명시
제7조(빅데이터 실태조사) ▶ 삭제 ↳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되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정비	제7조(위원회 설치)
제8조(빅데이터책임관) ▶ 삭제 ↳ 현 상황을 반영하여 정비(활용도 미미)	제8조(위원회 기능)
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→ 개정 제7, 8조	제9조(위원회 구성)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→ 개정 제9조	제10조(위원회 운영)
제11조(위원회 운영 등) → 개정 제10조	제11조(위원의 해촉)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→ 개정 제11조	제12조(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↳ 센터 설치 근거 및 수행업무, 운영 위탁 근거 명시(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까지 포함하여 수행)
제13조(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) → 개정 제12조 ↳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되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정비	제13조(예산의 지원) ▶ 신설 ↳ 예산지원 근거 마련(조문 정비)
제14조(빅데이터의 수집·관리) ▶ 삭제 ↳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삭제(개정안은 민간데이터 관련임)	제14조(정보보호를 위한 조치)
제15조(빅데이터의 활용) → 개정 제5조	제15조(시행규칙)
제16조(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) ▶ 삭제 ↳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되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정비	제16조(존속기한)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.
제17조(빅데이터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→ 개정 제12조	
제18조(사무의 위탁) ▶ 삭제 ↳ 개정안 제12조에 포함	
제19조(빅데이터 실태 점검·평가) ▶ 삭제 ↳ 위원회 수행 업무와 중복	
제20조(포상) ▶ 삭제	

현행	개정안
제21조(비밀보호를 위한 조치) → 개정 제15조	
제22조(시행규칙) → 개정 제14조	
부칙	부칙

-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함
(현행)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
(개정)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빅데이터”와 “데이터산업”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데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상 “데이터³⁾”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
- 안 제3조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
- 안 제4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, 빅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,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“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”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음
- 안 제6조는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, 기관·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, 시범사업 추진,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명시함
- 안 제7조, 제8조는 데이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과,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·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3)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데이터”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.

- 안 제12조는 기본 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지원,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,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기관,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
- 시도별 빅데이터센터 운영 현황

구분	센 터 명	규 모	인력	운영
서울	빅데이터캠퍼스 (‘16. 7.)	에스플렉스센터 15층(557m) (서울 상암동)	7명	직영
부산	빅데이터캠퍼스 (‘16. 7.)	부산정보산업진흥원 內 - 오픈개발실, 회의실, 테스트베드존	6명	위탁
대구	빅데이터활용센터 (‘19. 10.)	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內 - 활용센터, 분석실, 회의실	4명	위탁
경기	(前)경기 빅파이센터 (16. 3. ~ 18. 12.)	경기콘텐츠진흥원 內 ※ TF형태 유지(경기데이터드림 운영)	6명	직영
제주	제주 빅데이터센터 (‘19. 7.)	제주테크노파크 內 - 데이터랩실, 일반분석실, 교육장	5명	위탁
경남	경남 빅데이터센터 (‘21. 7 개소예정)	경남연구원 內 - 분석실, 교육장, 회의실	4명	위탁
충남	충남 빅데이터센터 (‘22년 구축예정)	위탁기관 검토 중	-	-

- 안 제14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·수집·처리·분석·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따르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최근 ICT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축적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음
- 데이터는 4차 산업 시대에서 AI(인공지능), 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산업의

연료 역할을 하고 있으며,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비대면 경제를 이끌 '데이터산업'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

- 도에서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AI(인공지능)·빅데이터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, 올해 1월 1일자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신성장 산업국으로 이관하고, 데이터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,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

※ 우리도 데이터 산업 육성 추진 사업

- 데이터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: '21. 3. ~ 8. / 8천만원
 -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: '21. 2. ~ 10. / 10억원
 -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공모 결과 : 7개 사업 선정, 국비 14억원 확보
- 본 조례안은 데이터산업 관련 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도 차원에서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
 - 다만,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과정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